

『서울대학교 法學』 투고규정

| | |
|------------------|------------------|
| 2006. 2. 28. 제정 | 2015. 2. 27. 개정 |
| 2008. 12. 12. 개정 | 2016. 11. 25. 개정 |
| 2009. 3. 13. 개정 | 2017. 2. 23. 개정 |
| 2012. 3. 9. 개정 | 2017. 5. 26. 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 및 투고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2. 23. 개정>

제2조 (원고의 작성)

-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 서평, 번역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영문(기타 구미어도 포함 이하 동일) 제목 표기}, 성명(괄호 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와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제목을 영어 아닌 구미어로 표시하는 때에는 영문 제목도 함께 기재한다. <2015. 2. 27. 개정>
- ③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 논문의 경우,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 ⑤ 논문, 판례평석의 경우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국·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 ⑥ 원고의 분량은 글자수 30,000자에서 60,000자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2016. 11. 25. 개정>
- ⑦ 초록의 분량은 글자수 800자에서 1,000자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초록도 이에 준한다. <2016. 11. 25. 분항 신설>

제3조 (원고제출과 접수)

- ①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당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파일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파일을 원고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12. 개정; 2017. 5. 26. 개정>

- ② 동일기관 소속 투고 비율이 전체 투고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속 투고에 대해 투고 순서 또는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017. 2. 23. 본항 신설>

제4조 (각주표기요령)

- ① 필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자가 복수인 경우 필자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표기한다.
 2. 기관 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논문집, 기타 문헌에 관계없이 책자의 명칭에 대한 표기는 국문인 경우 **고딕**으로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논문, 기타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신문기사 포함)에 대한 표기는 그 글의 제목을 “ ” 안에 포함시킨다.
- ③ 발행년월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2.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3. 논문집 기타 연 2회간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이 경우 발행년월을 표기할 수도 있다.
 4.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 ④ 쪽수를 표기함에 있어서 국문 문헌인 경우 ‘쪽’, ‘면’ 또는 ‘p.’, ‘pp.’를 혼용하고 영문 문헌인 경우는 ‘p.’, ‘pp.’로 표기한다. <2009. 3. 13. 개정>
- ⑤ 인용문헌별 표기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오도록 하되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저서
 - 가. 요령
 - i)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고딕**으로 표기한다.
 - ii)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나. 예시
 - 1) Michael Byers, *Custom, Power and the Power of Ru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100-121.

2) *Ibid.*

3) 홍길동, **국제법**(우수출판사, 2002), p.10.

4) 상계서, p.20.

5) M. Byers, *supra* note 1, p.141.

6) 홍길동, *supra* note 3, p.21. 또는 홍길동, 전계서, p.21.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가. 요령

i)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ii)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권호와 발행년도(발행년월을 밝혀도 무방함)를 밝힌다.

iii) 반복인용시 저서와 같은 방식에 따르되, 국문인 경우 ‘상계논문’, ‘전계논문’으로 표기한다.

나. 예시

1) 홍길동, “국제법상 침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XX권 제Y호 (2001. 2), pp.100-121.

2) Dieter Papenfuss, “The Fat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GDR within the Framework of German Un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No. 2 (1998), pp.467-470.

3. 학위논문

가. 요령

i) 저자명, 논문명, 학위논문의 종류, 학위수여 대학명 및 제출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ii)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박문수, 국제법상 형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XX대학교 (2000. 2), p.245.

2) A. Arnol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Ph. D. dissertation, YY University (1998. 5), p.400.

4. 편집된 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논문 또는 글

가. 요령

i) 해당논문 또는 글의 필자 명, 해당논문 또는 글의 제목, 편집자명, 편집된 저서의 제목을 표기하고 그 이후는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ii)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이몽룡, “국제법의 법적 성격”, 일지매 (편), 국제법의 이해 (XY출판사, 1999), pp.54-56.

2) John Freid, “How Efficient is International Law?,” in Karl Deutsch and Stanley Hoffmann(eds.), *The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r of Leo Gross* (Schenkman, 1968), p.93.

5. 자료

가.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정 관례

예시: *Application for Review of Judgement No. 333 of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87), p.22.

나. 일간지

예시: 성춘향, “외국인노동자 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XX일보 (2000. 11. 2), p.14.

다. 기타 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권호수 및 발행년월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해당자료의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예시: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2 May-21 July 1995, A/50/10, pp.21-24

제5조 (본 규정의 개정)

본 투고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